

Who Operates K SOX Program?

2nd Survey Report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June 2020

Samjong KPMG K SOX TFT

Contents

Key Takeaways	2
1. ICFR*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3
2. 경영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조직	8
3. 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조직	13
4. ICFR 평가 아웃소싱	18
별첨. 조사 대상 기업 구성, 주요 결과 요약	20

*ICFR이란?

미국의 Sarbanes-Oxley Act(2002)에서 규정하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재무보고 내부통제)'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에 준함

Key Takeaways

조사 대상

2020: 206개사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80개사)
2019: 124개사 (자산 2조원 이상 97개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1개사, 5천억원 미만 6개사)

ICFR 조직 유형 & 규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ICFR 전담팀은 평균 3.8명으로 구성

- ICFR 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총 206개사 중 174개사(84%)로, 전기(124개사 중 73개사 (59%)) 대비 25%p 증가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ICFR 전담팀 인원수는 3.8명으로 전기 대비 변동 없음
- 전담팀 외 조직의 평균 인원수는 3.9명(전기 3명)으로 증가했으나, ICFR 전담인원 수는 1.3명(전기 1.4명)으로 전담인원 비중은 하락하였음

ICFR 조직의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ICFR 담당조직 최고책임자 CFO인 경우 78%

- 자산 2조원 이상 중 ICFR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123개사이고, 이 중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CFO인 회사는 96개사(78%, 전기 61%)이며, 이 중 93개사의 CFO가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 ICFR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평가 주체)와 내부회계관리자(운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독립적 평가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함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88%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보유

-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중 111개사(88%)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보유 (전기 61% (97개사 중 59개사) 대비 27%p 증가)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조직에 대한 성과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은 0%, 인사권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69%임
- 감사(위원회)에 유의한 미비점까지만 보고하고, 단순한 미비점은 보고하지 않은 회사는 206개사 중 132개사(64%)

ICFR 평가 아웃소싱

감사제도 도입 초기 외부 전문가 활용 비중이 높음

-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중 2020년 ICFR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회사는 45개사 (36%)로 감사 원년인 2019년 활용 비중(67%) 대비 감소
-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위한 감독업무 지원조직도 없고 2020년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적도 없는 기업은 8개사로 나타남

1. ICFR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정 및 관리·운영 조직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조직의 형태나 독립성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나, 기능(운영, 점검, 감독)별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구분		내용	관련 법규
ICFR 정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외부감사법 §8.1
ICFR 규정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	외부감사법 §8.1, 동법 시행령 §9.2
ICFR 조직	운영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 보유 •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¹⁾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외부감사법 §8.3
	운영실태 점검	•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함 ²⁾ • 대표자는 운영실태보고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면 보고	외부감사법 §8.4, 동법 시행령 §9.4
	감독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³⁾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외부감사법 §8.5, 동법 시행령 §9.5

1)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함

2) 단,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음

3)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¹⁾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외부감사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조직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수행방안 등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시함

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구분	내용	관련 법규
경영진 운영실태 점검	경영진은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통제가 존재하는지 평가하며, 위험평가에 근거한 통제 운영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여야 함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18

- (원칙 16) 회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방안을 수립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53)
- (원칙 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 객관적인 평가-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함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53.7)
 - 독립적인 평가는 **내부의 객관성을 가진 인력 또는 외부인**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평가의 범위와 빈도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름 (설계·운영 개념체계 A97)
 - 독립적인 평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동일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주기적으로 통제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함 (설계·운영 개념체계 A97)
-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함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 예1: **내부통제 전담부서, 내부감사부서**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
 - 예2: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 구성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 예3: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내부통제팀 등)**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사의 준거기준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으로 구성.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으로 통칭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계속)

- 평가자에 따른 독립성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FAQ 30, 2019.6

평가자 구분	독립성 (객관성) 수준	평가 유형	평가 가능 여부	
			핵심통제 평가	비핵심통제 평가
통제운영자	매우 낮음	자가평가	불가	가능
통제운영자와 동일한 부서 인원	낮음	자가평가	보완 조치 시 가능	가능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 인원	낮음과 중간 사이	독립적인 평가	보완 조치 시 가능	가능
별도의 전담부서	중간 또는 높음	독립적인 평가	가능	가능
외부 아웃소싱	높음	독립적인 평가	가능	가능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계속)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를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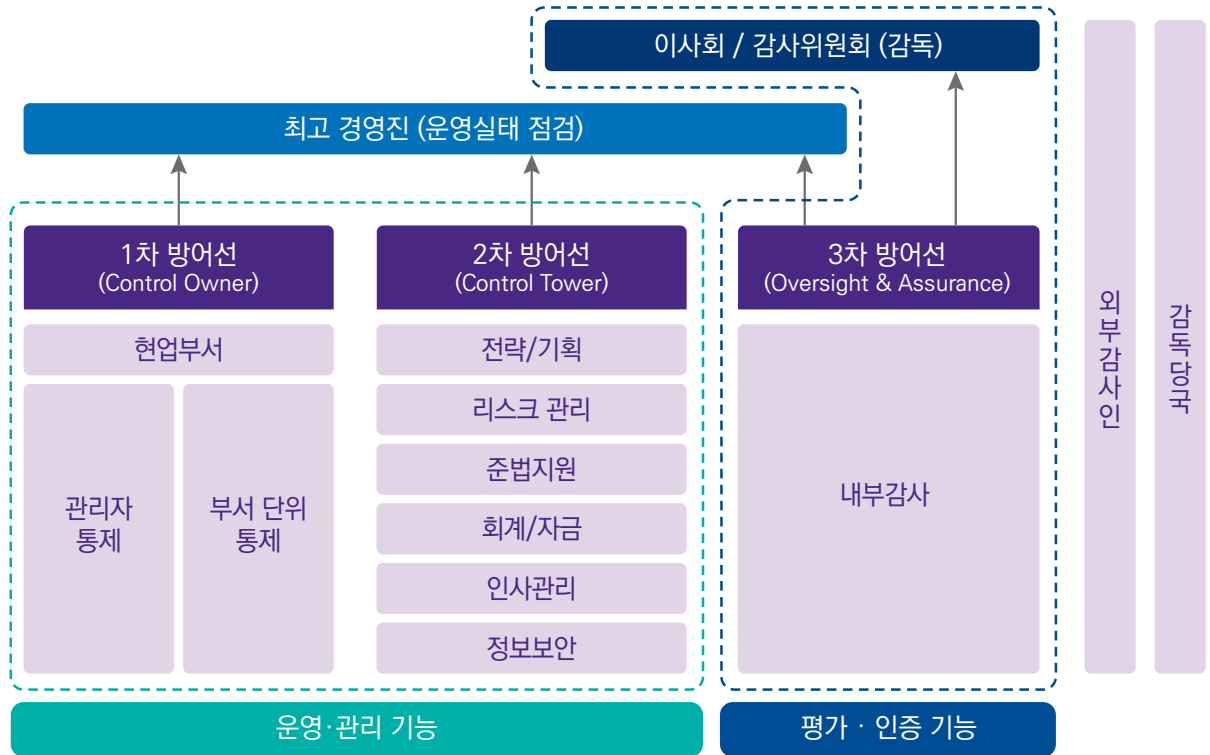
구분	내용	관련 법규
감사(위원회) 평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이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절차와 운영실태 평가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구분	내용	관련 법규
활용 자료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 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추가적인 테스트 수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 •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 테스트 수행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계속)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를 위한 3차 방어선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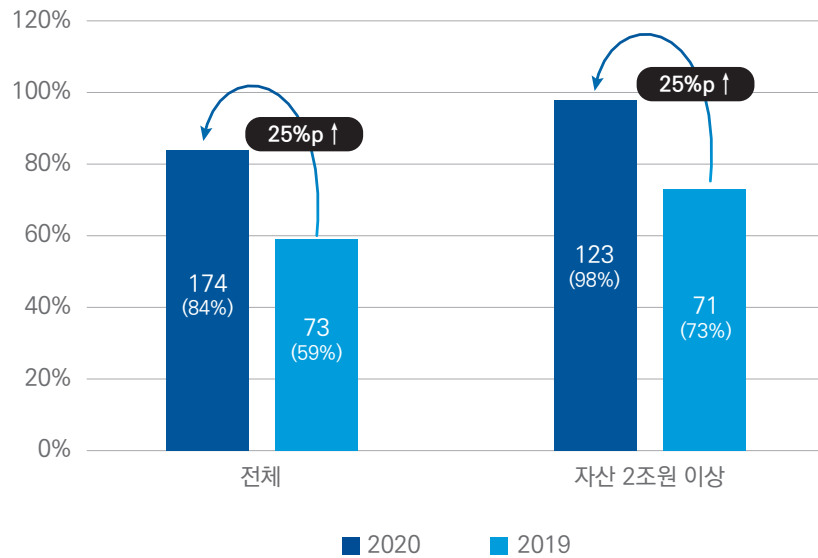
조사 대상

구분	2020		2019	
전체	206개사	100%	124개사	100%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61%	97개사	78%
자산 2조원 미만	80개사	39%	27개사	22%

2. 경영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조직

(1) ICFR 담당조직 유무

구분	2020	2019
전체	n=206	n=124
자산 2조원 이상	n=126	n=97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대부분(98%)은 경영진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

- 1 전체**
 - 206개사 중 174개사(84%)가 경영진 ICFR 담당조직 보유
 - 전년 124개사 중 73개사(59%) 대비 증가
- 2 2조 이상**
 - 126개사 중 123개사(98%)가 경영진 ICFR 담당조직 보유
 - 전년 97개사 중 71개사(73%)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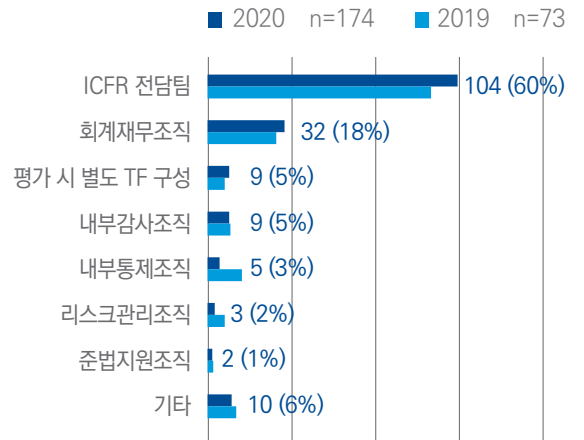
(2) ICFR 담당조직 유형

“
ICFR 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 10개 중
6개는 ICFR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 외 기업은
회계재무조직이나
별도 TFT,
내부감사조직 등을
통해 ICFR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① 전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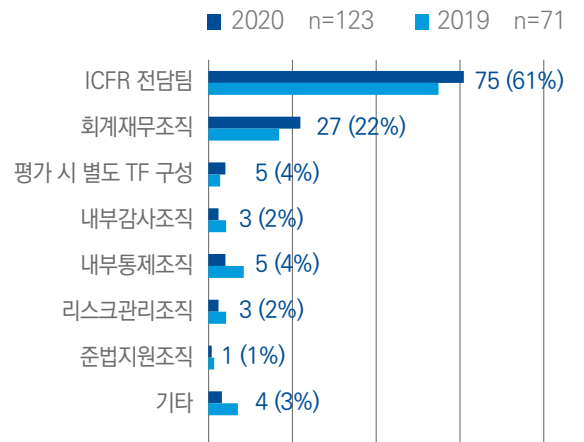
- ICFR 담당조직을 보유한 174개사 중 104개사(60%)가 전담팀 보유
- 전년 73개사 중 39개사(53%) 대비 7%p 증가



② 자산 2조원 이상

2조 이상

- 담당조직을 보유한 123개사 중 75개사(61%)가 전담팀 보유
- 전년 71개사 중 39개사(55%) 대비 6%p 증가



③ 자산 2조원 미만

2조 미만

- 전년에는 전담팀을 보유한 경우가 없었음
- 금년에는 담당조직 보유한 51개사 중 29개사(57%)가 전담팀 신설
 ✓ 이는 2020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ICFR 감사제도가 도입되는 데 기인

(3) ICFR 담당조직의 인원 수

“ 전기 대비하여 ICFR 전담조직의 인원 수는 변동이 미미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담팀 외 조직의 전체 인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담 인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

(전체) ICFR 담당조직 인원

구분	2020	2019
ICFR 전담팀		
인원 평균 (명)	3.4	3.8
전담 인원 평균 (명)	3.0	3.4
전담 인원 비중 ¹⁾	86%	87%
전담팀 외 조직 ²⁾		
인원 평균 (명)	3.9	3.0
전담 인원 평균 (명)	1.3	1.4
전담 인원 비중 ¹⁾	33%	46%

(자산 2조원 이상) ICFR 담당조직 인원

구분	2020	2019
ICFR 전담팀		
인원 평균 (명)	3.8	3.8
전담 인원 평균 (명)	3.3	3.4
전담 인원 비중 ¹⁾	87%	87%
전담팀 외 조직 ²⁾		
인원 평균 (명)	4.2	3.1
전담 인원 평균 (명)	1.6	1.4
전담 인원 비중 ¹⁾	38%	45%

① ICFR 전담팀

- 1** 전체
 - ICFR 전담팀 인원 수는 전년 대비 0.4명 감소(3.8→3.4)
 - 가용 인력이 제한적인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한 데 기인³⁾
- 2** 2조 이상
 - ICFR 전담팀 인원 수는 전년대와 동일한 3.8명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회계담당임직원의 2019년 사업연도 교육 이수율이 전년보다 증가⁴⁾

② 전담팀 외 조직

- 1** 전체
 - 전담팀 외 ICFR 전담 인원 수는 전년대와 유사 (1.4명→1.3명)
 - 전담팀 외 ICFR 담당조직의 인원 수는 전년 대비 증가 (3.0명→3.9명)
 - » ICFR 업무 부담 증가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판단됨
- 2** 2조 이상
 - 전담팀 외 ICFR 전담 인원 수는 전년대와 유사 (1.4명→1.6명)
 - 전담팀 외 ICFR 담당조직의 인원수는 전년 대비 증가 (3.1명→4.2명)

1) 리더나 팀장이 겸직인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담팀임에도 전담 인원 비중을 별도로 산출. 표에 기재된 인원으로 계산 시의 비중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표에 기재된 인원 수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이기 때문으로, 반올림 전 수치로 계산 시 표에 기재된 비중이 나옴. 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에도 동일

2) 회계재무조직, 내부감사조직, 내부통제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준법지원조직, 기타 조직을 포함. 평가 시 구성되는 별도 TF는 임시 조직이므로 제외

3) 조사 대상 중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비중: 2020년 39%, 2019년 22%

4) 2018년 44% → 2019년 70%, 출처: 사업보고서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3) ICFR 담당조직의 인원 수 (계속)

③ ICFR 전담팀 인원 분포_연도별

2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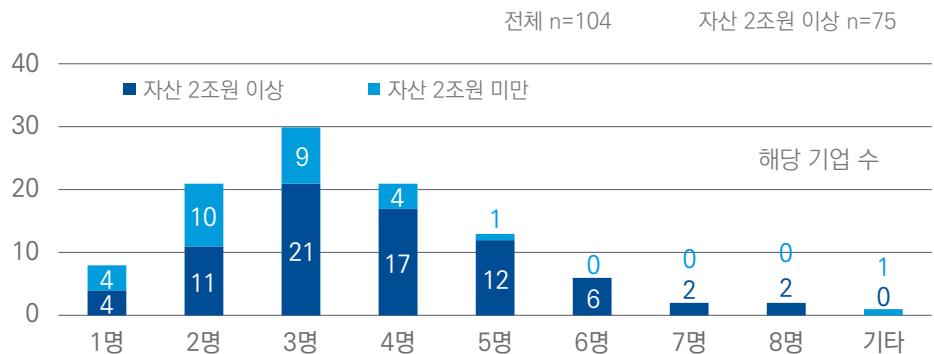
- ICFR 전담팀은 2~4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65%(75개사 중 49개사)를 차지

(자산 2조원 이상) ICFR 전담팀 인원 분포

전담팀 인원 수	2020		2019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평균	3.8명		3.8명	
1명	4	5%	1	3%
2명	11	15%	9	23%
3명	21	28%	10	26%
4명	17	23%	5	13%
5명	12	16%	9	23%
6명	6	8%	2	5%
7명	2	3%	1	3%
8명	2	3%	1	3%
9명	-	-	1	3%
계	75	100%	39	100%

“
ICFR 전담팀 인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3~4명,
자산 2조원 미만의 경우
2~3명인 경우가 많다.
”

④ ICFR 전담팀 인원 분포_자산별



(4) ICFR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

“ICFR 평가 조직이 CEO 또는 CFO 산하인 경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 2조 이상**
- 최고책임자가 CFO인 경우가 78%로 가장 많음
 - 전년 대비 17%p(61%→78%) 증가
 - 최고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자인 CEO, CFO인 경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필요
 - » 예: 감사(위원회)가 해당 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보유
 - 최고책임자가 내부감사실장 또는 감사(위원장)인 6개사의 경우에도 독립성 보완장치 미흡
 - » 보고라인: 5개사는 경영진, 1개사만 감사(위원회)
 - » 인사권: 3개사는 감사(위원회) 협의 명시, 1개사는 신분 보장 명시

(자산 2조원 이상) ICFR 담당조직 최고책임자

최고책임자	2020		2019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CFO	96	78%	43	61%
CEO	7	6%	6	8%
내부감사실장	3	2%	4	6%
감사(위원장)	3	2%	1	1%
준법지원(감시)인	1	1%	1	1%
미정	2	2%	-	-
기타 ¹⁾	11	9%	16	23%
계	123	100%	71	100%

(5) ICFR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의 내부회계관리자 겸직 여부

“ICFR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분리하거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조 이상**
- ICFR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CFO이면서,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는 담당조직 보유한 123개사 중 93개사
 -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담
 - ICFR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평가와 운영의 주체가 분리되지 않아 독립성 이슈 발생

(자산 2조원 이상) 최고책임자의 내부회계관리자 겸직 여부

ICFR담당조직 최고책임자	2020 (기업 수)		
	전체	내부회계관리자 겸직	겸직율
CFO	96	93	97%
CEO	7	-	-
내부감사실장	3	1	33%
감사(위원장)	3	-	-
(기타 생략)			
계	123	100	81%

1) 회계부장, 재무통제팀장, 기획처장, 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본부장, 준법경영실장, 수석부장 등

3. 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조직

(1)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의 유무

“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중
ICFR 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한 비중이
88%(111개사)로
전년 61% 대비
27%p 증가했다.

”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

구분	2020		2019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있음	111	88%	59	61%
경영진 평가조직과 다름	75	68%	데이터 없음	
경영진 평가조직과 동일	36	32%		
없음 또는 미정	15	12%	38	39%
계	126	100%	97	100%

2조
이상

- 감사위원회의 ICFR 감독업무 지원조직 보유 비중 증가 (61% → 88%)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111개사 중 75개사(68%)는 경영진 평가조직과 별개의 조직

(2)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의 유형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 유형

n = 111

조직의 유형	경영진 평가조직과 다름		경영진 평가조직과 동일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내부감사조직	48	A'그룹 64%	3	B'그룹 8%
ICFR 전담팀	5	7%	24	67%
회계재무조직	2	3%	4	11%
준법지원조직	2	3%	1	3%
이사회 사무국	1	A'그룹 1%	-	B'그룹 -
평가 시 별도 TF 구성	1	1%	-	-
IR팀	1	1%	-	-
내부통제조직	3	4%	2	6%
기타	12	16%	2	6%
계	75	100%	36	100%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경영진 평가조직이 동일한 경우, 조직 단일화와 평가절차 일원화로 ICFR 평가부담이 줄고,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직속된 지원조직이 경영진 평가를 담당하는 경우, 독립성이 확보되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기 모델은 미국의 대표적인 ICFR 조직 운영 모델이다.

”

- A 그룹**
 - 동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에 직속¹⁾ 되어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이라면, **감사위원회의 ICFR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경영진 평가 이후 추가적인 평가절차로 인해 **회사의 업무 부담 증가**
- A' 그룹**
 -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지 않은 조직인 경우, **형식적인 지원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대부분 경영진 Staff 조직이므로 **독립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 B 그룹**
 - 동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어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이라면, 조직 단일화와 평가절차 일원화를 통해 ICFR 업무부담과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
- B' 그룹**
 -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지 않은 조직인 경우, **경영진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 필요** (감사위원회가 직보라인, 성과평가권 및 인사권 보유 등)

1) 해당 조직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감사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 성과평가권, 인사권 등을 보유하고, 감사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 승인 및 감사결과 보고를 수령하는 등의 제도와 관행이 있을 때 이를 직속으로 간주

(2)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의 유형 (계속)

“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참고: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FAQ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예로,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이 마련되어야 함

(3) 감사(위원회)의 ICFR 감독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이
내부감사조직인
경우에도, 직보라인,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조직 중 31%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경영진 보고라인을
가지며, 인사권 등이
실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의 ICFR 감독 지원조직이 내부감사조직인 경우,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보유 여부¹⁾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이
내부감사조직인 기업
51개사²⁾

보고라인	경영진	16개사	31%
	감사위원회	35개사	69%
인사권	미공시	16개사	31%
	권한 보유	12개사	24%
	협의	16개사	31%
	보유 & 협의	2개사	4%
	신분만 보장	9개사	18%
성과평가권	모두 미공시		

2조
이상

-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인 내부감사조직 중 31%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경영진 보고라인 보유
- 인사권과 성과평가권은 각각 31%, 100% 미공시

1) 설문 기준으로는 111개사 중 18개사(16%)가 인사권과 성과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

2)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ICFR 감독 지원조직 유형’ 표에서 아래 합산 (48+3)

조직의 유형	경영진 평가조직과 다름		경영진 평가조직과 동일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내부감사조직	48	64%	3	8%

[Case Study]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¹⁾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란?

이사회

-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 보유

감사(위원회)

-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 활동

-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 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 ✓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 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 ✓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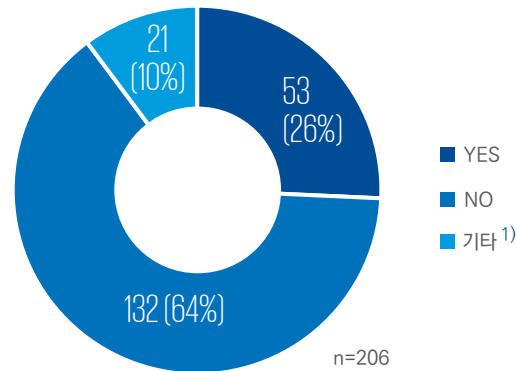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문단 95 재구성

(4) 감사(위원회)에 대한 미비점의 보고

전체

- 206개사 중 53개사(26%)가 경영진 평가에 보고된 단순한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함
- 206개사 중 132개사(64%)는 다음에 해당
 - » 유의한 미비점까지만 보고
 - » 단순한 미비점의 유무 또는 그 개수만 보고

단순한 미비점 & 유의한 미비점이 누락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지 여부



※ 참고: 감사(위원회)의 미비점 보고 수령 관련 법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문단 89	경영진은 운영실태평가 또는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확인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경영진은 평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취약점과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가결과 확인된) 유의한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한다.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경영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계획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보고한다.

“
 감사(위원회)는 모범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과 미비점이 시정·개선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취약점과 유의한 미비점 이외에 단순한 미비점까지 보고되어, 개선 점검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다.”

1) 해당 없음, 알 수 없음, 미정, 미응답

4. ICFR 평가 아웃소싱

(1) 2019~2020년 ICFR 평가의 Co/Out Sourcing 여부

“

ICFR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중은 2019년에 비해 3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베이 시점(4~5월)에 하반기 외주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을 고려하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① 자산 2조원 이상

조사 대상 사업연도		2020		2019	
구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외부전문가 활용		45	36%	85	67%
	공동수행 (Co-Sourcing)	33	26%	70	56%
	외부전문가 단독수행 (Out-Sourcing)	12	10%	15	12%
외부전문가 미활용 (회사 자체 수행) ¹⁾		44	35%	39	31%
미정 (계획 중)		36	29%	-	-
기타 ²⁾		1	1%	2	2%
계		126	100%	126	100%

2조 이상

- 감사 적용 1년 후(한국 2020년, 미국 2005년)의 외주 활용 비중은 한국 36%, 미국 75%로 큰 차이가 있음
- » 미정(계획 중)인 기업 중 2020년 하반기에 외주를 고려하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음

※ 참고: 미국의 ICFR 도입 초기 Co/Out Sourcing 활용 비중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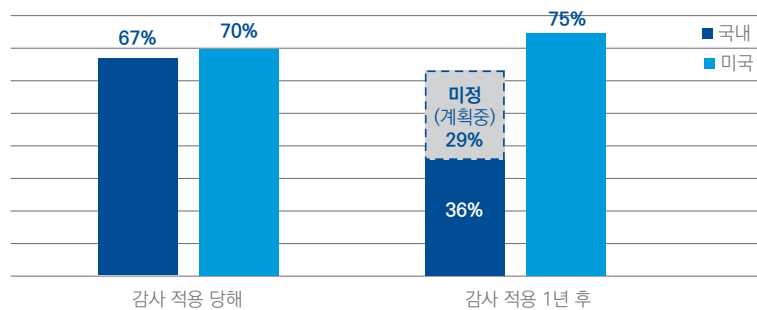
구분	감사 적용 당해	감사 적용 1년 후
Co-sourcing	37%	30%
Out-sourcing	33%	45%
계	70%	75%

“

미국은 2004년 ICFR 감사제도 도입 후 2년 간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이 70%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내부조직화(내재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Co/Out Sourcing 활용 비중 국내와 미국 비교



1) 감사(위원회)를 위한 감독업무 지원조직도 없고 2020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적도 없는 기업은 8개사

2) 해당 없음, 미응답

3) Protiviti, "Benchmarking SOX Costs, Hours and Controls", 2019: 미국 상장법인 임직원 693명 참여

(1) 2019~2020년 ICFR 평가의 Co/Out Sourcing 여부 (계속)

“

2020년부터 ICFR 감사가 적용되는 2조 미만 상장법인의 경우, 2019년 2조 이상 상장법인에 비해 외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계획 중인 회사를 고려할 때 연말에는 외주 비중이 유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자산 2조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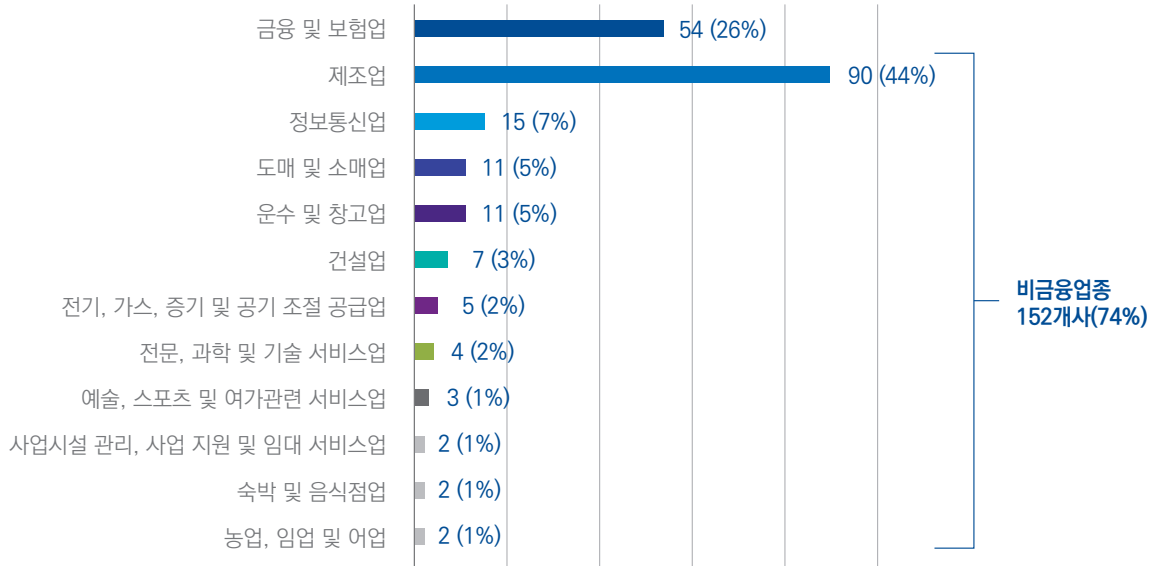
조사 대상 사업연도 및 기업		2020, 2조 미만		2019, 2조 이상	
구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외부전문가 활용		23	29%	85	67%
	공동수행 (Co-Sourcing)	18	23%	70	56%
	외부전문가 단독수행 (Out-Sourcing)	5	6%	15	12%
외부전문가 미활용 (회사 자체 수행)		24	30%	39	31%
미정 (계획 중)		30	38%	-	-
미응답		3	4%	2	2%
계		80	100%	126	100%

2조
미만

- 감사 원년(자산 2조 이상: 2019년, 자산 5천억 이상: 2020년)에 2조 이상 기업은 외주 비율이 67%, 2조 미만 기업은 29%로 나타남
 - »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38%로 연말에는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감사 원년과 외주 활용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별첨1: 조사 대상 기업 구성

(1) 업종별



(2) 자산 규모별

자산 규모	금융업종	비금융업종	전체
2조원 이상	46 (85%)	80 (53%)	126 (61%)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8 (15%)	72 (47%)	80 (39%)
계	54 (100%)	152 (100%)	206 (100%)

(3) 상장시장별

상장시장	금융업종	비금융업종	전체
유가증권시장	38 (70%)	126 (83%)	164 (80%)
코스닥시장	2 (4%)	21 (14%)	23 (11%)
비상장 ¹⁾	14 (26%)	5 (3%)	19 (9%)
계	54 (100%)	152 (100%)	206 (100%)

1) SEC 상장법인의 자회사

별첨2: 주요 결과 요약

(1) 조사 대상 전체

구분		2020		2019	
		n=206		n=124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ICFR 담당조직 보유		174	84%	73	59%
ICFR 담당조직 중 ICFR 전담팀 ¹⁾		104	60%	39	53%
ICFR 담당조직 인원 수 (명)					
	ICFR 전담팀	3.4 (평균)		3.8 (평균)	
	전담팀 외 조직	전체 인원		3.0 (평균)	
		ICFR 전담 인원		1.4 (평균)	
ICFR 담당조직의 조직 편제_최고책임자가 CFO인 비율 ²⁾		130	75%	44	60%
감사(위원회)를 위한 ICFR 감독업무 지원조직 유무		149	72%	62	5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조직 ³⁾		59	40%	39	63%
경영진 자체평가에서 보고된 사실(단순한 미비점 & 유의한 미비점)이 누락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		53	26%		
2019 회계연도의 ICFR 운영 및 평가 시 Co/Out Sourcing 여부		89	43%		
2020 회계연도의 ICFR 운영 및 평가 시 Co/Out Sourcing 여부		68	33%		

1) 2020년 n=174, 2019년 n=73

2) 2020년 n=174, 2019년 n=73

3) 2020년 n=149, 2019년 n=62

별첨2: 주요 결과 요약 (계속)

(2) 자산 2조원 이상

구분		2020		2019	
		n=126		n=97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ICFR 담당조직 보유		123	98%	71	73%
ICFR 담당조직 중 ICFR 전담팀 ¹⁾		75	61%	39	55%
ICFR 담당조직 인원 수 (명)					
	ICFR 전담팀	3.8 (평균)		3.8 (평균)	
	전담팀 외 조직	전체 인원		3.1 (평균)	
		ICFR 전담 인원		1.4 (평균)	
ICFR 담당조직의 조직 편제_최고책임자가 CFO인 비율 ²⁾		96	78%	43	61%
감사(위원회)를 위한 ICFR 감독업무 지원조직 유무		111	88%	59	61%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조직 ³⁾		51	46%	39	66%
경영진 자체평가에서 보고된 사실(단순한 미비점 & 유의한 미비점)이 누락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		40	32%		
2019 회계연도의 ICFR 운영 및 평가 시 Co/Out Sourcing 여부		85	67%		
2020 회계연도의 ICFR 운영 및 평가 시 Co/Out Sourcing 여부		45	36%		

1) 2020년 n=123, 2019년 n=71

2) 2020년 n=123, 2019년 n=71

3) 2020년 n=111, 2019년 n=59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E. eunsuphan@kr.kpmg.com

김유경 전무이사 (K SOX 전문조직 리더)

E. youkyoungkim@kr.kpmg.com

한상현 전무이사 (K SOX 전문조직 부 리더)

E. sanghyunhan@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K SOX 전문조직 간사)

E. jshim@kr.kpmg.com

이종우 전무이사

E. jongwoolee@kr.kpmg.com

이주한 전무이사

E. juhanlee@kr.kpmg.com

정현 상무이사

E. heonjung@kr.kpmg.com

박상욱 상무이사

E. sangokpark@kr.kpmg.com

이성노 상무이사

E. seongnolee@kr.kpmg.com

조정래 상무이사

E. jjoh@kr.kpmg.com

전현호 상무이사

E. hyunhojeon@kr.kpmg.com

지동현 상무이사

E. dchi@kr.kpmg.com

황구철 상무이사

E. khwang@kr.kpmg.com

박상욱 상무이사

E. sangwookpark@kr.kpmg.com

김연정 상무이사

E. yeonjungkim@kr.kpmg.com

정양기 상무이사

E. yangkijung@kr.kpmg.com

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처

엄수진 책임연구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E. sujineom@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